

2026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(희망사다리 I 유형) 시행계획(안)

2026. 2.

“ 빈틈없는 학생 성장 지원으로 인재 양성에 기여 ”

학 생 진 로 장 학 부



목 차

I. 사업개요	1
1. 추진 목적	1
2. 사업 개요	1
II. '26년도 주요 개선 사항	2
1. 의무종사 인정기업 기준 명확화	2
2. 의무종사 가능 중소·중견 기업 확대	2
3. 장학생 졸업 기준 완화	2
4. 의무종사 심사 기준 현행화	2
III.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	3
1.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	3
2.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	4
3. 장학생 선발	5
4. 장학생 의무사항	7
5. 사후관리	8
6. 추진일정	9

I 사업 개요

1 추진 목적

- 중소·중견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함

2 사업 개요

- 사업 기간 : '26. 3월 ~ '26. 12월(차년도 계속장학생 지원 포함)
- 사업 규모 : 40,230백만원
 - ※ 사업운영비 : 1,572백만원 별도(1·11유형 공통)
- 지원 대상 :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 3학년 이상, 전문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
 - ※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한국농수산대,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지원 가능
- 지원 금액 : 등록금 전액, 취·창업 지원금 200만 원(학기별)

<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지원 실적 >

구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
금액(백만 원)	46,046	44,497	48,406	44,097	44,116
건수(건)	9,382	9,105	9,687	8,616	8,342
인원(명)	5,902	5,540	5,415	5,104	4,817

II '26년도 주요 개선 사항

1 의무종사 인정기업 기준 명확화

□ '공공기관' 기준을 명확화하여 의무종사 심사 기준 정립

2025년	2026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

2 의무종사 가능 중소·중견 기업 확대

□ 중소·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무종사 대상기업 확대

2025년	2026년
<p><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소·중견기업 	<p><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초과 중소·중견기업 <p>※ '25년 졸업자까지 적용, '26년 졸업자부터 미적용</p>

3 장학생 졸업 기준 완화

□ 장학생의 원활한 의무종사 수행을 위해 수료(일)를 졸업(일)로 인정

2025년	2026년
<p><장학생 졸업일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의무종사) 의무종사란,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취·창업을 유지하는 것 	<p><장학생 졸업일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의무종사) 의무종사란,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*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취·창업을 유지하는 것 <p>* 졸업 유예, 수료 포함</p>

4 의무종사 심사 기준 현행화

□ 의무종사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현행화

-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35호, '26년 820,556원) 현행화를 통한 의무종사 심사 기준 강화

Ⅲ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

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
□ (지원 대상)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*에 재학 중인 자(대학 3학년 이상, 전문대 2학년 이상)

- * (사업 참여대학) 사업 참여 가능 대학*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
- ** (사업 참여 가능 대학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한국농수산대, 한국에너지공과대학

- 직전 학기 대학별 **최소이수학점 이상**을 이수하고, 직전 학기 성적이 **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**(신·편입생, 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)
- **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**
-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**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**
 - 단, 기수혜 대학 학적 상태가 **졸업으로 확인**되어야 하며, 전공심화·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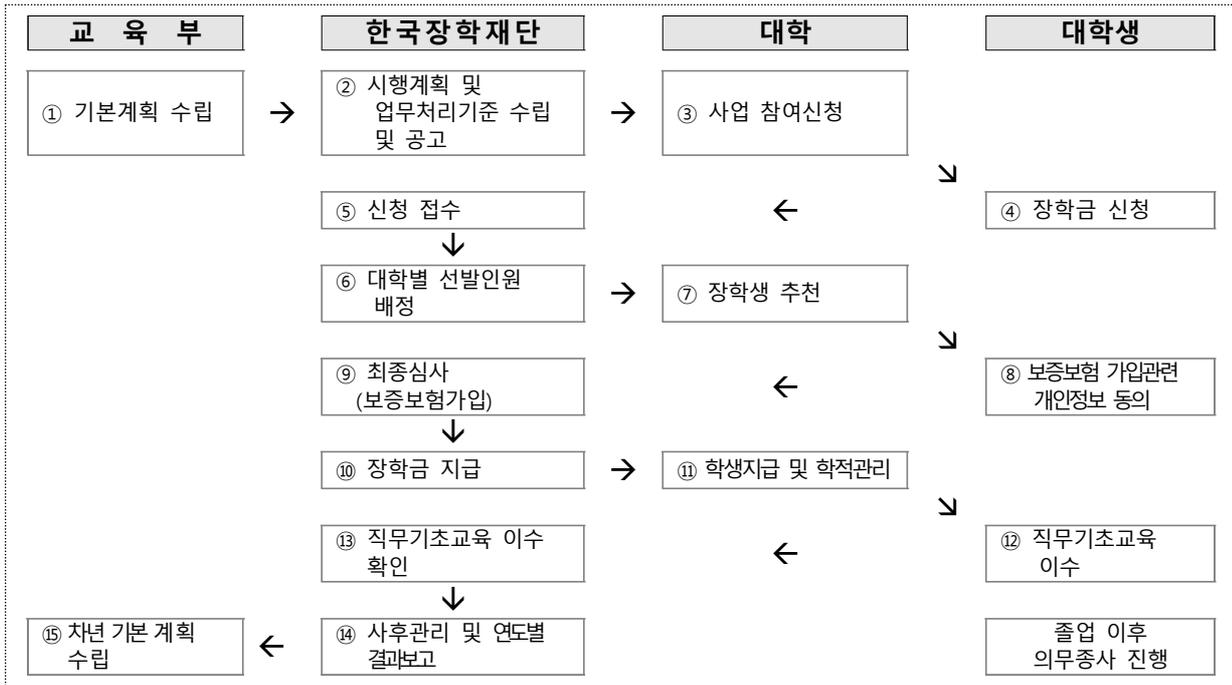
□ (지원 내용) 등록금 전액, 취·창업지원금 200만 원 지원

- 등록금 : 학기당 등록금 전액
 -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
 -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에 비례하여 중소·중견기업 의무종사 필요
- 취·창업지원금 : 학기당 200만 원
 -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·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·창업지원금 미지급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>

취업지원형	창업지원형
중소·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	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 유형) 운영 절차 >



2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

□ (장학금 신청)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,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

-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필수 진행
 - ※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미이수 시 신청 불가

□ (인원 배정) 우선 배정 인원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 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

-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·석사 연계과정 학생 수요 우선 배정
- 장학유형별(취업지원형, 창업지원형) 인원 배정은 유형 간 신청 인원 비율로 배정하되, 개별 유형 최소 배정 비율은 10%*로 함
 - * 유형별 신청 인원 비율이 미달할 경우 최종 배정 비율은 변동 가능
- 잔여 배정 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:50으로 할당*하고,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 배정
 - * 학제별·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 인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

3 장학생 선발

□ (신규 장학생)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·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대학 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

○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별도 기준*에 포함하여 마련

* 단,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사용 불가(저소득층 우대만 인정 가능)

<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) 장학생 추천 기준(예시) >

구분	학업성적		학생 취업·창업 의지 등 ¹⁾				저소득층 우대
	백분위 점수	배점 (50점)	취업지원형	배점 (50점)	창업지원형	배점 (50점)	가산점 (10점)
평가 기준	100점~97점	50	취업·창업 준비계획 ²⁾	20	취업·창업 준비 계획 ²⁾	20	저소득층 가산점 세부기준은 대학 자체 수립 ⁴⁾
	96점~93점	48					
	92점~90점	46					
	89점~87점	44	대학 자체기준 ³⁾	30	대학 자체기준 ³⁾	30	
	86점~83점	42					
	82점~80점	40					
	80점 미만	30					

1)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 기준으로 사용 불가(저소득층 우대 시에만 인정 가능)

2)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[붙임2]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

3) 청년/기술창업 우대, 취·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, 관련 강의/강좌 참여 여부,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

4)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은 필수로 반영하되 세부사항(평가기준 등)은 대학 자체기준 마련

○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서류이며, 미제출 시 대학 심사 탈락 처리(단,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발 가능)

○ 학생 성적, 학생 취·창업의지, 저소득층 우대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되, 배점 및 세부 항목(배점)은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

○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·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 선발자로 추천

○ 저소득층 가산점은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 시 적용

○ 특정 계열·학과로 편중 지양 및 정규 학기 내 졸업 가능 학생 추천 권장

□ (계속 장학생) 계속 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

-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*을 이수하고,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

* 졸업 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

* 대학 내 최소 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

□ (수혜 횟수) 선발 학기 소속 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 횟수 제한

-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수혜 횟수(①)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②)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
-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 횟수에 포함하나, 국가근로장학금·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
- 신규 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, 대학은 이연 장학금(전액)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 >

구분		2년제	3년제	4년제	5년제	6년제
일반대	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(①)	-	-	4회	6회	8회
	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②)			8회	10회	12회
전문대	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(①)	2회	4회	6회	8회	10회
	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②)	4회	6회	8회	10회	12회

※ 조기취업형 계약학과(3년제)는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

※ 글로벌 대학(다층학사제)의 경우 학사과정은 일반대,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

□ (기타 사항)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(포기자 포함) 및 수혜 종료자*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* 신규 장학생 선발 후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

- 단,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진학(편입)한 경우, 전공 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

4 장학생 의무사항

- (의무종사 이행) 장학금 수혜 학생은 졸업(졸업 유예, 수료 포함)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상태를 유지해야 함
 - 의무종사 기간 :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(180일)
 -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처리

- (직무기초교육 이수)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
 -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,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
 - ※ 단계별 상세 이수·증빙 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
 - 미이수 시, 해당 학기에 지급된 취·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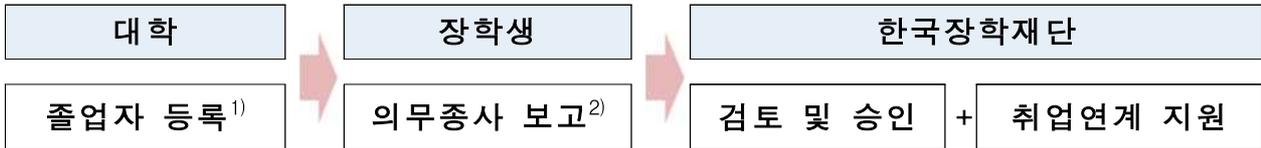
- (학적 유지)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
 -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
 -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 없이 최대 3년(6개 학기)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

- (정보제공 동의)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
 - ※ 보증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재단 지원
 - ※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후 보증보험 가입 지원

5 사후관리

- 장학생은 졸업(졸업 유예, 수료 포함)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,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환수

< 의무종사 이행 및 확인 절차 >



1) 학자금지원시스템 > 공통 > 학적상태관리 > 졸업/수료정보관리 > 등록

2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희망사다리장학금 > 의무종사관리 > 보고

※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

- (장학금 반환) 업무처리기준 및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,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금액을 재단에 상환

< 학적 구분에 따른 반환 사유 및 반환 기한 >

구분	재학 중 반환	졸업 후 반환
반환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퇴/제적 등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 ·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· 장학금 포기 신청 · 직무 기초교육 미이수 · 학자금 중복지원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무종사 미완료 · 의무종사 포기 · 재학 중 발생한 반환사유를 졸업 전까지 미해소한 경우
반환 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환 사유 발생 즉시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· 단,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즉시 반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즉시 기수혜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· 취·창업지원금의 경우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

※ 오 선발(허위정보 기재, 심사오류 등)의 경우 사유 발생 즉시 반환

- (장학금 환수)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증보험 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재단이 직접 해당 금액을 회수

-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
- 자퇴/제적자

-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
- 그 외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

(면제)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, 장애, 질병으로 장학생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장학금 반환(환수) 면제 가능

6 추진일정

(1학기) 신청접수('26. 3월) 및 장학금 지급('26. 3 ~ 5월)

(2학기) 신청접수('26. 9월) 및 장학금 지급('26. 10 ~ 12월)

일정 내용	1/4분기			2/4분기			3/4분기			4/4분기	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- 사업계획 수립	○	○						○				
- 장학생 모집			○							○		
- 장학생 심사 / 장학금 지급			○	○	○					○	○	○

※ 계속 장학생의 경우 별도 일정으로 운영되며,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